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8.>

[] 유선 승선료·선박 대여료 신고·변경신고서
[] 도선 운임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유선: 즉시 도선: 3일

신고인	상호(명칭)		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	
	주 소		(전화번호:)			
신고(변경신고) 사항	유·도선장의 위치					
	영업구역					
	선박명세					
	운항구간 또는 대선시간	운항구간 ~	대선시간 시간			
	유선 승선료	대인 원				
		소인 원				
	유선 대여료	척 원				
	도선 운임	대인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		
		소인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		
		화물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		
	적용일					
	변경 사유					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및 도선 운임을 신고·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관할관청의 장 귀하

신 고 인 제출서류	운임 산출계산서 1부(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